

##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526
----------	-----

提案日字：1994년12월27일

提案者：內務委員長

### 1. 提案理由

현행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대전직할시 의회사무처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근거법령

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의회 사무처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사위원회 설치 위임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.

### 2. 主要骨子

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1중 제5호 “인사 위원회 설치·운영” 을 삭제함.

##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위임사항) 별표 1중 총무과란 제5호를 “삭제”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

소관부서	일련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총 무 과	1	○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	지방공무원법 제6조	의회사무처장
	2	○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, 전보, 징계, 면직등의 임용권 전반	"	"
	3	○ 기능직공무원(6급이하)의 신규, 전보 승진임용(상당계급 승진), 징계, 면직등의 임용권 전반	"	"
	4	○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 기간 연장	"	"

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			개정			
소관부서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소관부서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법령
총무과	1	○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사무처내 전보권	지방 공무원법 제6조	총무과	1	(현행과 같음)	지방 공무원법 제6조
	2	○ 6급상당이하 별정 직공무원의 신규 임용, 전보, 징계, 면직등의 임용권 전반	·		2	(현행과 같음)	
	3	○ 기능직공무원(6급 이하)의 신규, 전보, 승진임용 (상당계급 승진), 징계, 면직등의 임용권 전반	·		3	(현행과 같음)	
	4	○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 기간 연장	·		4	(현행과 같음)	
	5	○ <u>인사위원회 설치·운영</u>	지방 공무원법 제7조		5	(삭제)	